

국회와 노동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론스타 ISDS 판정문 분석
대국민 보고대회

**‘론스타에 3천억 배상’
국민에게 말하지 않은 것**

2023. 3. 2.(목)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강당(지하 1층)

주최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참여연대,
민병덕 · 배진교 · 심상정 · 오기형 의원실

목 차

〈인사말〉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	1쪽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	3쪽
박경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	5쪽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8쪽
민병덕	국회의원	-----	10쪽
배진교	국회의원	-----	12쪽
심상정	국회의원	-----	14쪽
오기형	국회의원	-----	17쪽

〈발제〉

모피아의 “도장값” : 10년만에 유명처럼 국민을 찾아 온 고지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19쪽
---	-------	-----

〈토론〉

론스타 사건, 왜 패소했나? (송기호 변호사, 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	36쪽
법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금융위원회, 패소를 불렀다. (권영국 변호사, 전 론스타공대위 법률단장)	-----	53쪽
조세 쟁점과 정부의 95.4% 승소 주장 등 분석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전 론스타공대위 집행위원장)	-----	64쪽

인 사 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박홍배 위원장**

반갑습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박홍배입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에 나서며 대한민국에 등장한 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외환은행 매각으로 이미 4조원이 넘는 막대한 이익에도 만족할 줄 몰랐던 투기자본은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제소했습니다. 작년 8월, 10년간의 긴 분쟁 결과로 정부가 약 2,8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보수언론은 ‘95.4% 승소’, ‘정부의 성공적 대응’ 이라고 합니다.

잘 나가던 은행을 자격도 없는 해외 투기자본에 팔리도록 도와주고, 수많은 금융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했고, 또 다시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만든 모피아들이 책임은 지지 않고 다시 권력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03년 투기자본 론스타의 법률대리인 김앤장

의 고문이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003년 인수 승인 과정뿐만 아니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 승인 지연 당시에도 금융위 부위원장이었으며,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당시 금융위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가조작 사건 수사팀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여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은행권의 ‘과점’을 거론하며 ‘완전 경쟁 체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회계가 불투명하다며 억지 여론몰이를 하고, 연일 ‘노조때리기’에 열을 올리며,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마치 국익만을 위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론스타 사태를 만든 이들이 누구인지, 그 과정에서 국민과 노동자의 고통 속에 이득을 본 이들이 누구인지 명명백백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이번 보고대회가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보고대회를 주최해주신 정의당 심상정, 배진교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오기형 의원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번 보고대회의 좌장을 맡아주신 윤석현 금융감독원 전 원장님, 발제를 맡아주신 전성인 홍익대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토론자로 나서주신 송기호 변호사님, 권영국 변호사님,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인 사 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이재진 위원장**

바쁘신 가운데 ‘론스타 ISDS 판정문 분석 대국민 보고 대회’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이재진입니다.

우리 정부와 론스타 사이의 중재판정을 두고 10년이 흘렀지만 대한민국에게, 특별히 금융노동자들에게 론스타는 결코 지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피아라고 부르는, 론스타 사태 핵심 책임자들을 생각하면 론스타 사태는 지금 이 순간도 대한민국의 경제와 금융노동자들의 숨통을 조이는 생생한 현실입니다.

론스타 인수부터 매각까지 전 과정에 관여한 추경호 현 경제부총리, 한덕수 국무총리,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은폐하는데 관여한 이창용 한국은행총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분들 외에도 당시 핵심금융당국자로 직접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인물 대부분이 윤석열 정부와 함께 금융, 경제 기구의 수장으로, 혹은 낙하산으

로 금융산업을 장악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그들은 지금 관치라는 완장을 차고, 금융기관 검사라는 몽둥이를 제멋대로 휘두르며 금융과 경제 전반을 축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환경 따위는 무시하고 시장원리를 외면한 포퓰리즘 발언과 영터리 금리개입행태를 반복하더니, 기어이 중앙은행 기준금리까지 동결하는 비정상 경로를 선택하며 국가경제를 파탄 내는 중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국부유출 스캔들이라는 론스타 사태 책임자를 단 한 사람도 단죄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설상가상 그들에게 국가 금융정책의 최종결정권을 넘긴 처참한 대가가 금융산업 위기를 넘어 국가경제의 위기로 진화하는 중입니다.

이것이 바로 론스타가 사태가 여전히 2023년 대한민국에서도 생생한 현실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론스타 사태를 일으킨 모피아의 책임을 묻지 못하면, 결국 또 다시 노동자와 국민들이 대가를 치러야합니다. 사무금융노조는 기필코 이를 저지할 것입니다. 연대하여 주십시오.

오늘 보고 대회를 위해 애써주신 전성인 교수님과 송기호 변호사님, 권영국 변호사님과 김득의 대표님께 변함없는 신뢰와 고마움을 전합니다. 특별히 오늘 행사 좌장으로 금융노동자들 곁으로 돌아오신 윤석현 전 금융감독원장님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경준 정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실련 정책위원장 박경준 변호사입니다.

오늘 <론스타 ISDS 판정문 분석 대국민 보고 대회>를 위해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보고 대회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민병덕·배진교·심상정·오기형 의원님과 특히 오늘 보고 대회의 좌장을 맡아주신 윤석현 前금융감독원장님과 발제를 맡아주신 전성인 교수님, 그리고 토론자로 참여하신 시민사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민사회는 지난 10여년 간 론스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한마음으로 뛰어왔고, 이를 통해 ‘모피아—하나금융—론스타’ 간의 밀실협약과 공모관계를 우리 사회에 고발하고 단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여전히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고, 모피아 책임자들의 잘못을 또 다시 묵인하고만 있습니다. 지난해 8월경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중재판정 결과,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하는 줄 알면서도 외환은행을 불법 인수토록 개입했던 모피아 관료들의 잘못이 재확인됐습니다. 당시 자신들의 잘못이 언론과 법원 판결로 밝혀지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다시 하나금융에게 불법 매각토록 또한 개입했던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정부가 모피아 관료들의 이러한 잘못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로 막대한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론스타에게 물어주게 됐지만, 모피아 책임자들에게 구상권 청구나 조사는커녕 그 잘못을 또 묵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직에 있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총재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론스타 사태의 모피아 책임자들입니다. 이러한 모피아 관료들의 잘못이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윤석열 정부는 안일한 대응을 넘어서서 책임자들을 낙하산 인사로 떠받들면서 론스타 사건을 또다시 은폐하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론스타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지난 론스타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모피아 책임자들에 대한 단죄를 촉구합니다. 저희 경실련은 제2, 제3의 론스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모피아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과 그 진실이 우리 사회에 밝혀질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 자리는 중요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앞으로 정부의 ISDS 불복 절차와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내실 있는 토론이 이어져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토론회 준비에 힘써주신 의원실과 이 자리를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말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론스타 사태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산업자본인 론스타는 처음부터 은행법상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지난 십수 년간 반복해 외쳐왔고, 수차례에 걸쳐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론스타를 포함해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 금융당국의 그 누구도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작년 8월 론스타와 한국정부 간 투자자-국가분쟁(Investor-State Dispute, ISD) 사건의 중재판정 결과가 나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해 9월 정부가 공개한 판정문(영문본)에는 1천여 개의 인명(人名)은 물론 다수의 각주(脚註)가 외교 기밀을 이유로 통째로 삭제되었다고 지적하며, 지난달 22일 판정문 최종 번역본을 공개했습니다. 아직도 감춰야 할 이름과 외교 기밀이 있다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이처럼 론스타 사태는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막대한 국부가 유출된 이 사건의 시작과 끝에 관여한 금융당국 관계자들, 소위 말하는 모피아(MOFIA)

의 책임은 여전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론스타의 4.7조 원 먹튀와 3천억 원 배상을 수업료로 생각하고,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업료로 대체 우리사회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역대 어느 정부도 그 누구에게도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못했고,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도 번번이 놓쳐왔습니다. 특히 론스타 사태의 처음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우리의 법과 제도가 론스타에 의해 철저히 유린당하는 과정에서 소위 모피아(MOFIA)라 불리는 경제관료들이 보여준 행태는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사실상 불법에 대한 방조 혹은 동조로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들은 론스타와 관련된 전 과정을 틀어쥐고 국가보다 론스타와 모피아의 이익을 위해 금융질서를 왜곡해 왔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당시부터 산업자본이었다는 근거는 차고 넘치는데, 당시의 그 잘못된 결정을 내린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아무 배움도 없는 수업료를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모피아 책임을 물어야 론스타 사태가 끝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일개 사모펀드의 사기 행각과 그 하수인인 금융 감독당국의 부도덕함과 방만함의 쫓값을 국민들이 책임져야 합니까. 론스타 사태 사실관계를 국민에게 낱알이 규명하고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기 전에는 결코 론스타 사태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론스타 사태를 우리 사회로 소환(召喚)하고 고발(告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참여연대는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론스타 사건과 모피아들의 책임소재를 묻고 그 책임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여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합니다.

<론스타 ISDS 판정문 분석 대국민 보고 대회>를 준비하고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사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병덕 (안양 동안구갑)**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 국회의원 민병덕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9월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ISDS 판정문을 받고 서둘러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긴급토론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이후 곧바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정무위 여러 의원님들과 팀을 만들어서 공부하고 전략을 세워서 질의를 나눠서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국정감사에서 론스타는 2003년과 2012년 사이 기간에도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였기에, 대한민국의 은행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을 수 없다는 점과 이러한 사실들을 금융당국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외면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청구금액 대비 95.4% 승소하고 4.6% 일부 패소한 것’이라며, ISDS 판정에 대해 마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나 있을법한 평가를 내 놓았습니다. 판정문 역시 법무부에서 해석하고 논평한 부분만이 언론에 나올 뿐이었습니다. 결국, 론스타 사태의 진실과 근원을 확인하는 것은 국회와 민간 연구자에게 남겨졌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 도서관에 영문 번역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의원실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기에, 각 의원실이 ISDS 판정문을 나눠서 번역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연구자분들과 시민단체가 국회와 함께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국문 번역본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진실과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노력이며, 우리의 교훈이 한 단계 쌓이는 자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보고대회를 준비해 주신 전성인 교수님, 윤석현 전 금융감독원장님, 송기호 변호사님, 권영국 변호사님,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주최해 주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참여연대 관계자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자리해주신 모든 분께 댁내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인 사 말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 (비례대표)**

안녕하세요? 정의당 배진교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론스타 ISDS 판정문 분석 대국민 보고대회’에 함께 해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지난 10년간 변함없이 론스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 준 시민사회단체의 회원분들께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2년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활동을 하면서 론스타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대응을 여러분과 함께 해왔습니다.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였다는 이슈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ISDS중재에 대한 논리를 잘못 주장했다는 지적을 했고, 정부가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모든 문서를 제공 받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금융위원장의 인사청문회, 한덕수 국무총리 인사청문

회를 통해 ISDS중재판정부의 최종 판정이 이뤄지면 관련 문서 일체를 국민께 공개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낸 바 있습니다. 매번의 상임위와 국정감사에서 론스타의 이슈를 놓치지 않고 끌고 왔고, 지난 9월 일부패소라는 판결이 공개됨과 동시에 론스타의 배상결정 과정을 짚어보고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이곳 국회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정의당은 론스타에게 단 한 푼의 국민혈세가 지불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이를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확인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9월 대한민국 정부는 론스타에게 2800억 원의 배상하라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 결과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고 여전히 실제적 진실은 은폐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판정문도 1,400여개의 이름과 각주를 외교기밀이라는 이유로 삭제하고 공개함으로써 관련자와 책임자를 판별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 외교관련 비밀 우선주의로는 론스타의 사건의 진실과 책임자 처벌은 묘연할 뿐입니다. 론스타를 둘러싼 책임자들이 현 정부의 고위직에 자리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제 국회 차원에서 론스타청문회와 나아가서는 국정조사까지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론스타사건을 종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오늘 함께 해 주신 많은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론스타 사건의 진실이 한 톨의 숨김없이 국민께 공개되고 책임자가 그에 부응하는 처분을 받는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말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 (경기 고양갑)**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익숙한 얼굴들을 다시 뵙습니다. '론스타 사건'이 벌써 20년째 이어지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 20년동안 한결 같이 진실과 책임을 찾아 싸워오고 계십니다.

작년 8월 우리 국민은 론스타에 2억 1,650만달러(약 3천억원)를 배상하라는 날벼락 같은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한 뒤 매각해서 4조 7천억원의 차익을 가져갔는데 이제 배상금까지 물어줘야 합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먹튀를 넘어 속이고 튀었다'고 규정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에 놀아났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국부유출에서 국격손상에 이르기까지 국민들로서는 참담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판정이 나오고 한 달이 지난, 작년 9월 법무부는 판정문 원문인 영문본으로만 공개했습니다. 국문 번역본을 공개할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 도서관에 판정문 번역을 의뢰했고, 1월 말 각주를 제외한 최종 번역본이 나왔습니다. 이를 국민들이 보실 수 있게 편집하여 지난 22일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500쪽이 넘는 방대한 양과 전문적 내용이라 많은 국민들이 쉽게 읽어보시기는 어려우실 것이기에, 바로 오늘 전문가들을 모시고 판정문 내용에 대한 분석을 국민들께 보고 드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님, 전성인 교수님, 권영국 변호사님, 송기호 변호사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전문가들의 분석과 설명을 듣기에 앞서, 이 자리에서 저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을 요구합니다.

먼저 이번 판정문은 100% 공개된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1,000여 건의 인명을 지웠습니다. 외교기밀이라는 이유로 몇 개의 각주를 통째로 지웠습니다. 이미 판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감추어야만 하는 이름들과 외교기밀이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당장 판정문 전문을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을 정부가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매국입니다. 론스

타에 대한 감사와 검찰 조사가 있었지만 산업자본 여부에 대해서는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국회의장님과 양당 원내대표에게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와 관련하여 금융 관료들의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정조사로 문서검증과 책임규명에 나서고, 결과에 따라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론스타 사태는 국제투기자본과 대한민국 관료가 결탁하여 국부를 유출한 중대한 매국사건입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앞으로 또 20년이 지난다 해도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규명할 것입니다. 중재판정이 나왔으니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금융관료의 도덕적 해이와 명백한 범법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 사 말



**더불어민당 국회의원
오기형 (서울 도봉을)**

안녕하십니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을 국회의원 오기형
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론스타 ISDS 판정문 번역본 대국민 보고
대회」에 관심 가지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공동주최를 해 주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각 관계자 여
러분 및 민병덕, 배진교, 심상정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
다.

2022년 8월 30일, 정부와 론스타 사이의 ISDS는 정부의 론스타에 대
한 약 3천억 원 규모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습
니다. 중재판정문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외환은행에 대한 론스타
의 투자와 관련하여 신의성실로써 행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금융
위원회는 자신의 법적 임무를 이행하는 것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

시 함으로써 자신의 규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중재판정에 관한 취소신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ISDS는 단심 중재절차이며, 취소신청은 재심과 유사한 절차일 뿐입니다. ISDS의 경우 상소를 통하여 종전 논의된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을 별도로 새롭게 다룰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은 과제는 책임추궁과 재발방지입니다. 정부가 3천억 원 규모의 돈을 물어주게 됐고, 그에 따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입니다. 이번 중재판정에도 불구하고 ‘관계자들이 아무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방치하고 넘어갈 것인가? 이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필요합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신의성실로써 행동하지 않았다’는 중재판정과 관련하여, 조사와 책임을 논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누는 말씀들은 향후 후속 논의에 귀중한 보탬이 될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발제자와 토론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발제

모피아의 “도장값”: 10년만에 유령처럼 국민을 찾아 온 고지서

2023.3.2.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목 차

- 비극의 서막 or 관행적인 탈법?: Q 대신 P (2003.7.)
- 다시 부활한 도장값 타령: 호놀룰루 회담 (2011.3.)
- 도장값의 실행(?): 런던 회담 (2011. 11.)
- 누구를 위한 도장값이었나?
- 모피아 도장값의 최종 지불자: 국민
- 아마추어가 본 업무상 배임:구성 요건과 고의
- 모피아의 민사상 책임
- 이제는 국민이 모피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

비극의 서막 or 관행적인 탈법?: Q 대신 P (2003.7.)

3

외환은행 이달용 부행장과 변양호 금정국장 대화 (2003.7.7.)

▣ 변양호 국장 통화 통화 내용 (이달용 부행장)

- Qualification에 대해 KEB는 신경쓰지 않아도 됨. 정부가 알아서 할 것임
 - (극단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 지정까지도 가능. 어떻게든 Deal이 되어야 할 것임
- 곧 옮길 것 같으나 시기는 확정되지 않음. 본인이 있는 동안 KEB Deal이 해결되기를 바람. LS도 본인 거취에 대해서 알고 있음
- (KEB) : 국장이 걱정! LS앞으로 이러한 분위기 전달 또는 연결을 주지 말 것을 요청 (KEB의 협상력 약화 결과)
 - 그렇게 하겠음
- (KEB) : Qualification issue를 Deal 할상시 Leverage를 사용해도 좋은가?
 - (LS도 KEB Mgt.에게 등 issue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 **중**

4

★ 2003. 7. 9. (수) 이재원의 업무일지 중 '이달용 부행장 + 변국장' 부분
(변양호 사건 법원 제1심 판결문, p. 869)

(변국장)

- 조흥은행 price formula에 맞춰줘라
- 2.6배, Mid point @4,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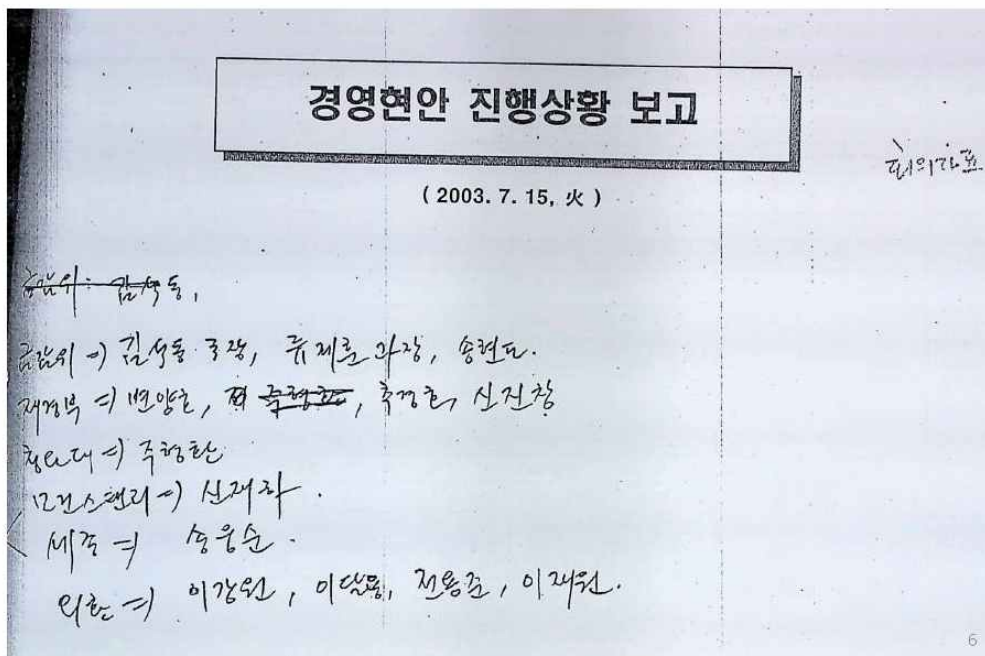
(이달용) 안 됨

(변국장)

- @4,250-4,300 해보아라
- 변국장+김석동 국장 합의하고 Qual 풀어주면 누가 시비를 걸겠는가?
- Steven Lee 급박한 상황, Loan Committee, ABN Amro 부결된 상황. 그러므로 쓸 수 없음
- Deal break시 Steven Lee, Paul Yoo 그만 두어야 함

5

조선포텔 관계기관 대책회의 (2003.7.15.)



모피아의 “도장값”: Q 대신 P로

금감위국장 : 1,2안은 법률 문제이므로 금감위에서 검토하고 3,4안은 재정부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빨리 알려주기 바랍니다. Final한것은 아니더라도

재정부국장 : 그러면 Release는 KEB에서 해 주시고 Qualification 문제는 김국장께서
 들어가서 상의해 보시고...

금감위국장 : 이번 답이 한국에서 몇 번째로 한 답이시?

재정부국장 : 그렇게 요즘 외자유치 실적도 별로 없는데...

금감위국장 : 내주 금감위 위원들과 상의해 보아야겠어요.
 간담회가 내주 금요일에 있거든.

재정부국장 : 수순입은행에도 조금 있다가 얘기 할 것입니다. 각자 Line별로 픽션을 나해
 주시고 수순입은행을 우리가 선택한 것이니...
 금감위에선 Q Sign 떨어지면 뭐라 음식있시다.

금감위국장 : 원래 도장값도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시... 도장값이 비싸야 될
 텐데... 1,2,3,4안이 다 비슷한 도장값이죠

그러나 예외승인을 해주어도 Q(론스타의 인수자격)는 미해결 상태!!!

보낸 날짜: 2008년 7월 24일 목요일 오전 8:10
 제목: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관련

안녕하십니까, 이팀장님, 그리고 박차장님.

Lone Star의 qualification 관련 제안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간략히 드립니다.

한편 론스타의 참여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은행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qualification issue를 해소한다고 하더라도 비금융주력자의 관련한 문제는 여전히 남는 것
 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정경제부 등에서 비금융주력자에 관한 점을 들어 의문을 제기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비금융주력자는 외
 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에 대하여서는 적용되지 않는 개념이라든가, 은행법 시행령 제1조
 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인 개념 중 제6호 내지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집단의
 개념은 외국인에 대하여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저희가 위
 에서 이미 말씀 드린 바와 같습니다).

론스타도 안된다는 것 알고 있었음

• 론스타 사건 법원 제1심 판결문(pp. 938 ~ 939)

2003. 7. 16. 론스타-외환은행 자문사 회의

○ 김앤장(박준, 김도영, 정태현), 시티그룹(스캇오, 샤리아치스티), 외환은행(박상균), MS(김상범, 박노훈), 세종(이성훈, 최중혁) 참석

- 김앤장 : LS를 금융기관으로 인정해 주거나 외환은행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구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어떤가 함

- 세종 : 김앤장의 논리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LS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임

9

2003.7.의 “도장값” 상황 정리

- 핵심 관점: Q 대신 P
 - 론스타는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다 (Q의 문제)
 - 그걸 모피아가 적당히 해결해 줄 테니 론스타가 지불하는 외환은행 주식 인수가격을 높여라 (P의 문제)
- 도장값의 의미
 - 모피아가 법을 왜곡하고(또는 위반하면서) 무자격자인 론스타가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해 줄테니, 돈이나 조금 더 쳐 주라.
- 도장값의 불법성과 관련자들의 불법성 인지
 - 예외승인으로 비틀어 봐도 “비금융주력자” 문제는 여전히 남는 것
 - 세종, 외환은행, 재경부, 금감원과 금융위(?), 김앤장과 론스타(?)는 모두 이 딜이 안되는 딜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

10

다시 부활한 도장값 타령: 호놀룰루 회담 (2011.3.)

11

호놀룰루 회담의 개요

- 일시: 2011.3.29.
- 장소: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 주요 참석자: 김병호(하나금융지주), 엘리스 쇼트(론스타)
- 회담의 의제: 2011.3.16. 금융위의 결정(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다) 이후 론스타의 탈출 및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편입 방안 논의
- 기록 및 활용: 론스타 측이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한 후, 이를 한국 정부와의 ISDS, 하나금융지주와의 ICC 중재에 증거로 제출하여 세상에 알려짐

12

다시 등장하는 도장값 타령

588. Nevertheless, the surreptitious recording by Lone Star of the Honolulu Meeting records Mr. ■■■■ attributing a very specific strategy to the FSC, although qualifying it by attributing the source to "my feeling." Mr. ■■■■ suggested that the FSC would like to show the public that Hana obtained a KRW 300 per share reduction. When Mr. ■■■■ asked if the FSC made that position explicit. Mr. ■■■■ replied that they had not, qualifying his denial by stating that the FSC had alluded to share price in pointing out that Hana could take advantage of the Additional Consideration clause to make it appear as though there was a real change.↵

588. 그럼에도 불구하고, 론스타가 호놀룰루 회의 내용을 기록한 기밀자료에 따르면, ■■■■는 구체적인 전략을 언급하며 이것이 금융위원회의 전략임을 발언했고, 다만 금융위원회가 그 출처라는 발언은 "제 느낌"이라며 선을 그었다. ■■■■는 금융위원회가 대중에게 하나금융이 주당 300 원 감액을 이루어냈음을 보여주고 싶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 금융위원회가 해당 입장을 명확히 했는지 물어보자, ■■■■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며, 다만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이 추가대가(Additional Consideration) 조항을 이용해 진정한 변경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식 가격을 암시했다고 발언했다.↵

13

김병호가 엘리스 쇼트에게 전달하는 당시 금융위 입장의 원문(중재판정문 각주 810)

■■■■ Uh, and the message deli-delivered to our Chairman ■■■■ is, from him [the FSC Chairman] is, he is, he is really willing to do something to approve this transaction. But he also in need of, in a sense, assistance or help from us, uh, to wisely overcome the hurdles that he is facing with, especially related to public blame, or political blame that he might come up with when he approve this deal. So I believe that he is really willing to do something for us, but at the same time, we – if there is anything that we can help him to go through the whole, you know, task that we have to do something for him too. So that's the kind of situation.

* * * * *

14

호놀룰루 회담의 함의

- 금융위는 일부에서 생각하듯이 2011년 하반기에 어쩔 수 없이 국민 여론에 떠밀려 가격 개입(인하 압박)에 나선 것이 아니다!
 - 2011.3.29. 이전의 어느 시점부터 Q와 P를 교환하려는 생각(즉 도장값 받고 도장 찍어 줌)을 가지고 있었음
- 다만 2011년의 도장값(가격 인하)은 2003의 도장값(가격 인상)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차별성도 존재!
 - 2003년: 외환은행 주식이 사실상 정부(=국민) 재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도장값의 수혜자는 국가라고 우길 수 있는 소지가 일부 존재함
 - 2011년: 그러나 2011년에는 론스타에게 가격 인하 압박을 할 경우 그 수혜자는 하나금융지주일 뿐, 국민이 아님.
 - 오히려 론스타가 가격 개입의 부당성을 이유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할 경우 그 불똥이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으므로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불이익이 될 가능성 존재
- 이런 정황에도 불구하고 모피아는 이후 실질적으로 Q와 P를 맞바꾸는 도장값 시나리오를 추구한 것임
 - 그 이유는 오직 모피아라는 자신의 조직의 안위를 지키겠다는 사적 동기였음

15

도장값의 실행(?): 런던 회담 (2011. 11.)

16

런던 회담(제2차 회담)의 개요

- 일시: 2011.11.25~26. (cf: 제1차 런던 회담은 2011.11.11. 개최)
- 장소: 영국 런던
- 주요 참석자: 김승유(하나금융지주), 그레이켄(론스타)
- 회담의 의제: 2011.11.11. 회담에서 하나가 론스타에게 제시한 수정 가격인 주당 11,900원에 대한 후속 협의
- 회담의 주목할 만한 측면: 김석동 및 모피아의 승인 여부
 - (론스타) 수정가격 수용하면 금융위가 승인해 줄 것인가?
 - (김승유) 수용하면 내가 하루 이틀 내에 확답 얻을 수 있다
 - (김승유-김석동) 당일 저녁 전화로 “오래 통화”
 - => 익일 김석동-김승유 간 공항 면담은 궁극적으로 취소
- 기록 및 활용: 론스타 측이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한 후, 이를 한국 정부와의 ISDS, 하나금융지주와의 ICC 중재에 증거로 제출하여 세상에 알려짐
 - 세부 정황에 대해 3자간 법정 증언이 상이함

17

녹취로 확보된 객관적 사실

652. Hana Chairman ■■■ testified that he “did not tell Lone Star during the [November 25] negotiation that the FSC was conditioning its approval on a price reduction, because the FSC had never said anything like that,” but Lone Star surreptitiously recorded the meeting and his actual words are in evidence. Hana Chairman ■■■ is recorded saying:↵

Well, if we decide the price, I'll give you assurance within one or two days.↵

MR. ■■■ So you have, have you discussed this price reduction with the FSC?↵

CHAIRMAN ■■■ Not really, but uh, I do have a feeling. I do have many dialogues with FSC. But I have a feeling. I

652. ■■■ 하나그룹 회장은 “[11 월 25 일] 협상 당시 금융위원회에서 가격인하를 승인 조건으로 한다고 론스타에 말하지 않았습니니다. 금융위원회가 그렇게 말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증언했지만, 론스타는 비밀리에 회의 내용을 녹취하였고, 그가 실제 한 말이 증거가 되었다. 녹취록에서 ■■■ 하나그룹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자, 가격이 결정되면 1~2 일 내로 확정해 드리겠습니다.↵

■■■ 이 가격인하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와 논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회장. 딱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 느낌이 그래요. 저는 금융위원회와 많은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느낌이

18

김석동-김승유 간 “오랜 통화”

656. Although the Hana Chairman told Lone Star that he and the FSC Chairman had planned to meet face-to-face in London to discuss the results of the 25 November 2011 meeting with Lone Star, one of the Hana officials, Mr. ■■■■ wrote to Mr. ■■■■ that “[t]onight [the] two chairmen had a long conversation about our meeting result over the phone call, which made it unnecessary for them to meet each other at the airport;” however, he wrote, Hana Chairman ■■■■ wished to meet with a Lone Star representative the next day “in order to explain the responses from [the] FSC Chairman and discuss ... the subsequent issues.”⁴²

656. 하나그룹 회장이 자신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론스타와의 2011년 11월 25일 회의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론스타와 런던에서 직접 만날 계획이라고 론스타에 말하였다. 하지만 하나그룹 관계자 ■■■■는 ■■■■에게 “오늘 밤 두 분이 전화통화로 회의 결과에 대해 오랜 대화를 나눴고, 공항에서 만날 필요가 없었습니다.”라고 기재했다. 그러나 ■■■■ 하나그룹 회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답변을 설명하고... 차후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날 론스타 대표와 만나기를 원하였다.⁴²

김석동의 부인성 증언

657. The accounts of what was said by the FSC Chairman in that “long conversation” differ wildly. FSC Chairman Kim testified as follows:⁴³

[Hana Chairman] ■■■■ told me that Lone Star wanted the application to be approved swiftly, and then asked me whether I would be able to have dinner with him when I would be in London the following day. I replied firmly that the review process would proceed in accordance with law, that whether to approve the application rested on the commission’s decision, and that, accordingly, I could not comment on it. Then I declined to have dinner with [Hana Chairman] ■■■■. [emphasis added]⁴³

657. 그 “오랜 대화”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설명은 매우 다르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⁴³

■■■■ [하나그룹 회장]이 론스타는 신청이 빨리 승인되었으면 한다고 말했고, 다음 날 런던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심사절차가 법에 따라 진행될 것이며 신청 승인 여부는 위원회의 결정에 달려 있으므로 이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단호히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 [하나그룹 회장]과의 저녁 식사를 거절했습니다.[강조추가]⁴³

20

그레이켄의 증언

659. Lone Star Chairman Mr. ■■■■ on the other hand testified that he was given a very different version from the Hana Chairman. He “recall[s] very clearly [Hana] Chairman ■■■■ telling me that the FSC Chairman had confirmed that the price cut was essential to getting the transaction approved, and had agreed that he would support FSC approval of Hana’s application on the new terms.” Indeed, “[i]t was only on the basis of that FSC assurance that the deal would finally go through that we agreed to proceed with the price reduction.”⁴

659. 반면 ■■■■ 론스타 회장은 하나그룹 회장과는 사뭇 다른 내용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는 “[하나그룹] ■■■■ 회장이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거래 승인을 위해 가격인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고, 금융위원회가 그러한 새로운 조건을 토대로 하나그룹 신청 승인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저에게 말한 것을 분명히 기억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사실 “우리가 가격을 인하하기로 합의한 것은 거래가 최종적으로 성사될 것이라는 금융위원회의 확신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⁴

21

누구를 위한 도장값이었나?

22

“자신들의 조직 보호”라는 모피아의 사적 이익을 위해 불법행위 자행

21. The Tribunal by majority concludes that:⁴³

(a) the FSC declined to approve Hana in the autumn of 2011 because of public and political opposition to Lone Star not only as an “Eat and Run” investor but, worse still, a “Cheat and Run” investor;⁴⁴

(b) in so doing, the FSC abused its regulatory discretion by preferring its own self-interest to performance of its statutory mandate; it succumbed to a conflict of interest;⁴⁵

(c) the misconduct of the FSC violated the treaty obligation of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including Good Faith, because:⁴⁶

21. 본 중재판정부의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⁴³

(a)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먹튀” 투지지 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속이고 뛰는” 투자자라는 반대여론과 정치적 반대 때문에 2011년 가을 하나그룹의 승인을 거부하였다. ⁴⁴

(b) 위와 같이 함에 있어서, 금융위원회는 자신의 법적 임무를 이행하는 것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 함으로써 자신의 규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 [번역 추가: 금융위원회는 이해상충에 굴복한 것이다]

(c) 금융위원회의 부당행위는 신의성실을 포함한 공정공평대우라는 조약 의무를 위반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⁴⁶

⁴³

모피아 도장값의 최종 지불자: 국민

24

모피아 도장값의 대가=국민 배상

24. The Tribunal by majority therefore awards to the Claimant, LSF-KEB, one half of the USD 433 million loss, namely USD 216.5 million.↵

25. The Tribunal by majority awards interest on USD 216.5 million from 3 December 2011 until the date of payment, compounded annually at the average one-month U.S. Treasury rate.↵

24. 따라서 본 중재판정부의 다수의견은, 미화 4억3,300만달러의 손실의 절반, 즉 미화 2억1,650만달러를 청구인 LSF-KEB에게 배상하도록 판정한다. ↵

25. 본 중재판정부의 다수의견은, 미화 2억 1,650만달러에 대한 이자를 지급일까지, 평균 1개월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연간 복리로 지급할 것을 판정한다. ↵

25

아마추어가 본 업무상 배임: 구성요건과 고의

26

형법상 배임과 업무상 배임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7

업무상 배임의 구성요건 검토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공무원은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
 -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금융위 설치법 제3조 제1항)
 - 그런데 사익 추구를 위해 감독상 임무를 방기하였음
 - 그 결과 **“이해상충에 굴복(succumbed to a conflict of interest)”**
-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
 - 부당하게 론스타를 탈출시켜 은행 소유했던 불법적 투자이익을 누리게 하고, 부당하게 매각가격 인하를 압박하여 하나금융지주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
-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
 - 모피아 범죄행위의 결과로 본인(=국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귀착시켜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

28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

- 론스타가 일본의 비금융회사 소유로 인한 비금융주력자임을 알면서도 2011.3.16. 면죄부 부여로 탈출의 기반을 마련해 줌
 - 호놀룰루 회담(2011.3.29) 이전부터 론스타-하나금융지주 간의 거래를 승인 하되, 도장값 조로 가격 인하 필요성을 암시
 - 2011년 4월 19일자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검토” 내부 문건에서 론스타가 부당한 처사를 당할 경우 한국 정부를 상대로 ICSID에 국제 투자자 중재를 제기할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검토
 - 2011.5.25. KBS의 일본 소재 골프장 보도 이후에도 비금융주력자 논점을 뭉갠으로써 부당한 투자이익 향유를 계속 허용
 - 2011.11.25. 전후하여 부당한 가격 인하를 사실상 압박
- => 순백처럼 결백하지도 않고, 불법 행위가 과실인 것도 아니었고, 불법행위를 할 경우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그 경우 결국 국가의 손해로 귀결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

29

모피아의 민사상 책임

30

국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 후 모피 아에 대한 구상권 청구

민법상 사용자의 구상권 청구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게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상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21., 2016. 5. 29.>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14.]

31



진실 규명을 위한 우선적 조사대상 (전현직 공직자로 일단 한정)

- 2008.9. 론스타 자백 관련 직무유기
 -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이창용 전 금융위 부위원장
- 2011.3.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라 볼 수 없다.
 -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신제윤 전 금융위 부위원장
 - 최종구 전 금융위 상임위원
- 2011.5. 이후 매각까지
 -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추경호 전 금융위 부위원장
 - 이석준 전 금융위 상임위원
- 2012년 ISDS 부실 대응 관련
 - ISDS 대응 TF 내의 성명불상자

토론 1

론스타 사건, 왜 패소했나?

송기호(변호사, 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1. 판정부의 한국 패소 판정 논거

가. 공정공평대우 의무 문제

(1) 한-벨기에 투자보호협정의 공정공평대우 규정

2조 2항: Investments made by investors of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t all times be accorded fair and equitable treatment...(생략)
(체약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를 항상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해야 [한다])

(2)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

론스타 중재 판정부는, 한국 금융위가 자신 조직의 정치적 이익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론스타로 하여금, (i) 외환은행 주식 매도 가격 인하에 응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ii)금융위의 처분 명령에 의하여 외환은행 주식을 공개 주식 시장에서 팔게 되어 외환은행 경영권 프리미엄을 하나금융에 팔 기회를 상실하든지 하나를 선택할 딜레마에 처하게 했다. 이는 한-벨기에 투자보호협정의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¹⁾

판정부: 금융위는 ‘정당한 정책 목적’ 에서가 아니라 그 자신의 자기 이익에서 잘못을 저질렀다. 금융위는 민간 기업의 계약에서의 가격에 개입하는 것이 자신의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권한을 자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행사하여 론스타와 하나금융 사이의 외환은행 경영권 인수 계약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하나금융의 신청에 대한 승인을 지연시켰다고 판단

나. 대한민국의 항변이 배척당한 논거

(1) 대한민국 항변 내용

금융위의 승인 지연은 2011년과 2012년 초 사이에 추가적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며, 2011. 3. 10. 대법원의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취지 판결이 없었다면 하나금융의 인수 승인 신청은 금융위의 2011. 3. 16.자 정기 회의에서 검토되었고 승인되었을 것이라고 항변

(2) 판정부는 이를 배척함

한국은 이미 위 2011년 3월에 하나금융 인수 승인 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금융위가 가지고 있었다.²⁾ 금융위는 론스타에게 외환은행 주식을 증권거래소를 통해 공개 매도하라는 징벌적 명령을 하지 않았다.³⁾ 론스타를 산업자본(NFBO)으로 규정하지도 않았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승인을 취소하지도 않았다. 론스타의 주주 자격을 취소하지도 않았다. 계속 하나금융의 인수 자격을 심사했을 뿐이다.

1) 판정문 782, 783항

2) 판정문 836항

3) 판정문 940항

다. 한국 패소의 결정적 증거가 된 금융위 내부 문서

(1) 판정부는 금융위 내부 문서와 하나금융의 서한들을 근거로 이를 배척, 금융위가 가격 인하를 조직하였다고 판정

(2) 하나금융의 금융위 보고 문서

하나금융은 2011. 11. 14. 금융위에 현황보고서 제출(증거번호 C-271) 보고서는 하나금융이 론스타에게 한국 정치 여건, 주가조작사건 유죄 판결 후 론스타 법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인수 가격 변경을 제안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 보고서에 대해 당시 금융위 실무 책임자 손주형 팀장은 판정부에서 이렇게 증언함

“보고서는 내가 하나금융에게 요구했던 범위를 벗어나 있어 나는 놀랐다(surprised). 나는 단지 하나금융에게 론스타와의 기존 계약을 유지할 것인지를 물었다. 하지만 보고서는 론스타의 가격이 시세보다 70-80% 비싸다는 비판을 언급하고, 가격을 깎기 위한 하나금융의 노력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나는 보고서를 받고 당황했다(flustered). 왜냐하면 나는 주식인수가격에 대하여 어떤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

(3) 2011. 11. 6.자 금융위 내부 문서 ' 론스타 주요 쟁점 '(증거번호 C-786)

금융위는 이 문제의 하나금융 보고서를 받기 전인 2011. 11. 6.,

4) 판정문 주석 883

하나금융이 론스타에게 계약 위반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추진할 방안을 연구한 내부 문서 여기에는 하나금융이 440억원의 계약금을 몰취당할 가능성도 적시

금융위는 금융위가 론스타에게 처분명령을 내리면 론스타는 국제 중재와 정치적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분석

판정부는 금융위가 왜 하나금융의 론스타에 대한 계약 위반 문제를 연구해야 하는지 대한민국측은 설명하지 못했다.⁵⁾

(4) 2011. 11. 18. 이후 문서 '론스타 관련 Q&A' (증거번호 C-769)

하나금융의 보고를 받은 이후인 2011. 11. 18., 금융위는 이 내부 문서에서 하나금융이 론스타에게 국내정치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가격 인하 제안을 했다고 분석⁶⁾

(5) 론스타 주가조작 판결 이전 시점의 금융위 내부 문서

(가) 이미 금융위는 론스타의 주가조작 유죄 판결이 나기 전의 시점인, 2011년 4월 경의 문서들(C-581, C-764),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매각 '에서⁷⁾ " 법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하나금융의 인수를 승인해 주면 정치적 논쟁 부담이 있다. 론스타 먹튀를 도와주고 용인해 주고 하나금융에 특혜를 주었다는 정치적 공격이 있을 것이다 " 신속하게 승인을 할 경우 먹튀를 정부가 도와주었다는 논쟁으로 이어질 것이다.⁸⁾

(나) 금융위의 2011. 4. 19. 내부 문서,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관련 금융위 검토' (증거번호 C-572) 이 문서에는 세 가지 추진 방

5) 판정문 631항

6) 판정문 642항

7) 판정문 주 816

8) 판정문 주819

안을 검토했는데, 그 내용은 3주 전인 2011. 3. 29. 하나금융 관계자가 론스타 관계자를 하와이에서 만나 말한 추진 방안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⁹⁾

이에 대하여 판정부 중재인 Browe은 하나금융이 금융위와 비밀 작업한 증거는 이 금융위 내부 문서에, 하나금융 관계자가 말한 것과 동일한 '3안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에 대해서는 결정 보류 + 하나 인수는 승인)이 언급된 점에서 확인된다. 이 문서는 론스타 주가조작 유죄판결이 나오기 전에 작성된 문서임을 환기해야 한다¹⁰⁾고 판정문에서 언급

결국 판정부는 금융위 내부 문서 금융위는 지문을 남기지 않는 비밀 작업을 하였으나 금융위 내부 문서가 많은 유죄근거 증거를 담고 있다고 판단¹¹⁾,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자격 문제가 없었음에도 금융위가 불법적으로 가격 인하를 승인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봄

라. 하나금융이 패소에 미친 영향

(1) 하나금융을 보는 판정부의 시각

판정문의 표현을 보면, 하나금융의 노골적 기회주의, 금융위의 조직이기주의, 그리고 론스타의 지속적인 국제중재회부 경고 전략이 한국의 패소를 가져옴 판정부는 하나금융이 론스타의 처지를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함¹²⁾

판정부는 하나금융의 행위에 대해 기회주의적이었고, 금융위가 외

9) 판정문 936항

10) 판정문 주881

11) 판정문 936항

12) 판정문 861항

부 비판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려는 상황을 이용하였다고 봄¹³⁾

(2) 하나금융 회장의 증언

하나금융 회장은 론스타-하나금융의 국제상사분쟁(ICC)에서 증인으로 증언: 2011 3 15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을 만남. ” 김석동 위원장은 하나금융의 인수 승인 절차와 관련하여 “굉장한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다” 고 자신에게 말했다.¹⁴⁾ 만일 그 압력이 줄어들었다면 금융위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대주주지분 인수 승인이 완료되는 데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¹⁵⁾

판정부의 평가

“하나금융 회장과 금융위 위원장은 오랜 친구였다” “금융위 위원장은 애매함없이 하나금융 회장과 소통했는데, 금융위가 승인을 하려면 가격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격을 인하해야, 승인이 금감위 조직에 가져다 줄 잠재적 정치적 과급력에 대한 금감위 위원장의 걱정을 덜 수 있다¹⁶⁾ 가격을 깎아 거래를 성사시키면 이는 하나 금융에게는 커다란 경제적 이익이다.¹⁷⁾

(3)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호놀룰루 회의 자료

론스타 선정 중재인 Browe의 판단

2011. 3. 29., 호놀룰루 회의에서, 당시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서로 협상하였던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정하지 않으면 금융위가

13) 판정문 865항

14) 판정문 850항

15) 판정문 582항

16) 판정문 853항

17) 판정문 856항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하나금융으로부터 론스타에게 최초로 통보되었다.

하나금융이 금융위와 비밀 작업한 증거는 금융위 내부 문서 중 ' 3안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에 대해서는 의견 유보 + 인수는 승인)에서 확인된다.¹⁸⁾

하나금융 관계자는 3안에 대하여 금융위로부터 직접 듣지는 않았으나 하나은행을 대리한 로펌에게서 들었다고 증언

(4) 하나금융이 론스타에게 접촉하여 전달한 금융위 의사

2011. 10. 28., 하나금융 관계자가 론스타 관계자에게 전화, " 금융위는 하나가 새로운 주식매매가격을 다시 협상하기를 원한다. 가격을 충분히 낮추어 금융위가 론스타를 혼내 준 것으로 보일 정치적 커버를 금융위에게 제공하면 인수 승인될 것 " ¹⁹⁾

론스타측 관계자 증언 " 하나금융 관계자는 2011. 10. 28., 10. 29., 11. 1. 모두 세 차례 전화를 걸어 와, 금융위가 하나금융 회장에게 론스타와 접촉해서 주식인수가격을 낮추라고 요청했다. " 금융위는 론스타에게 너무 많은 이익을 남기게 해 주었다는 비판을 받고 싶지 않다. " 론스타 관계자는 이 세 차례 전화 통화 사실과 그 내용을 보고했던 이메일을 확인해서 날짜를 기억(이 내용이 기재된 세 건의 이메일이 증거로 제출됨²⁰⁾ 판정부는 이 이메일의 존재와 내용을 통해 하나금융이 론스타에게 한 전화 통화 내용이 사실일 것으로 판단함

18) 판정문 주 881

19) 판정문 620항

20) 판정문 624항

(5) 하나금융 회장이 론스타에 보낸 이메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2011. 10. 28., 론스타 회장에게 이메일을 보냄(증거번호 C-262, 판정문에 모두 5회 인용)

”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금융위는 하나금융의 주식인수 승인 신청에 대한 승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 ” 징벌적 매각 명령(장외거래가 아닌 주식시장에서의 공개 매각)을 론스타에게 내려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하나금융은 지금 상황에서 그러한 명령을 적용할 일이 아니라고 금융위를 설득해 왔다 “ ” 우리는 금융위에 가해지는 정치적 압력을 덜어 주는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

” 금융위가 (론스타 유가조작 유죄 판결 후) 론스타에게 내린 조치는 제스처이고, 금융위는 비난에서 벗어날 길을 찾을 수 있다면 가능한 한 속히 상황을 해결하기를 원한다고 나는 믿는다 “²¹⁾

‘징벌적 매각 명령을 론스타에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판정부는 하나금융이 지금까지 이에 대해 성공적으로 반대해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해석²²⁾

(6) 하나금융 회장의 또 다른 이메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2011. 11. 11. 또 다른 메일 서한(증거번호 R-117, 판정문에서 모두 3차례 인용)

“정치 일정표와 선거를 고려할 때 금년 12월이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last window)”²³⁾

21) 판정문 621항

22) 판정문 494항

23) 판정문 496항 주890

마. 외환카드주가조작 판결에만 기댄 한국 논리의 모순

(1) 외환카드 주가 조작 판결이 없었다면 금융위는 2011. 3. 16.로 예정된 하나금융인수 승인신청 심사 절차에서 승인해 주었을 것이라는 한국측 주장이 한국 발목 잡음

(2) 이 주장에 대해 판정부는, " 그렇다면 당시 2011년 3월 기준으로, 금융위는 하나금융의 인수 승인 심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다 " 이후 금융위의 입장 변화는 인수자로서의 하나금융의 자격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

" 론스타는 국제중재제기라는 다른 형태로 배상을 받겠다는 뜻을 금융위에 명백하게 통지하면서, 금융당국의 의지에 굴복한 것이다. 그러므로 론스타가 가격을 깎아 주었으므로 론스타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

2. 판정 무효 사유가 있는가?

가. ICSID 협약 52(1)조상의 판정 무효 사유(한정적 사유)

- (1) 판정부 구성의 오류(the Tribunal was not properly constituted)
- (2)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일탈(the Tribunal has manifestly exceeded its powers)
- (3) 판정부의 부정부패(there was corruption on the part of a member of the Tribunal)
- (4) 기본적 절차 규정의 심각한 위반(there has been a serious departure from a fundamental rule of procedure) 또는
- (5) 판정 이유를 부기하지 않는 판정문(the award has failed to state the reasons on which it is based)

나. 법무부 구상 3가지 판정 무효 사유

- (1) 한벨기에 BIT 적용 범위 관련 관할권 위반,
- (2) 변론권 보장,
- (3) 증거 채택 문제

다. 법무부 주장 무효 사유 관련 ICSID 판례

(1) BIT 적용 시적 범위

BIT를 적용하는 시적 범위에 관한 ICSID의 일관된 판례: 사건의 단초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분쟁이 구체화된 시점이 기준 (Maffezini 사건, Micula 사건, Gambrinus 사건)

한국 패소 근거가 된 가격 인하 개입행위는 투자보협정 발효 2011 3 27 이후에 구체화된 사건이므로 한벨기에 BIT 적용됨

(2) 변론권 보장(right to be heard)

론스타 판정부는 하나금융과의 국제상사중재 자료에 대한 한국의 변론권 보장함(판정문 105항-107항)

(3) 증거채택 문제

ICSID의 일관된 판례(Tulip 사건, Wena 사건), 증거의 관련성과 증명력 평가는 판정부의 재량이고 이를 무효 근거로 삼을 수 없음

다. 법무부가 판정 무효 근거로 주장하는 소수의견 분석

소수의견은 그 내용이 판정무효사유가 될 수 없는, 인과관계와 손해 분배 비율에 대한 것

판정무효 사유에 대한 것이 아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사이에 판정무효 사유 관련 견해 차는 판정문에 제시되지 않았음

다수의견은 20페이지에 걸쳐 소수의견의 손해비율 주장 별도 반박(쌍방 5:5 손해 부담이 적정하다는 내용²⁴)

라. 론스타 판정 무효 신청의 경제적 비용

2022. 8. 선고 후 3년간 원리금 305억원 증가 추산

2022. 10. 6.자 미 1개월물 국채금리 3.05%를 가정할 경우, 원리금 3,110억원은 지연 이자 복리 적용 판정에 따라 2025. 9. 1.에 3,415 억원이 됨 약 305억원의 원리금 부담 증가

미 금리 상승 변수에 따라 지연이자, 변호사 비용, 중재판정부 비용 모두 합하면 약 400 억원 추가 부담 가능성

론스타 판정, 강제 집행 유예 받더라도 복리 지연이자는 계속 증가

마. 법무부가 판정 무효 ‘충분한 승산이 있다’ 고 국민에게 말하는 근거 검증 받아야

24) 판정문 p.321- p.339

3.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440개 부분을 삭제하고 판정문 공개 이로 인해 협정 위반 행위 관련자들을 특정하지 못해 일관된 확인과 분석에 장애를 초래함

나. 법과 절차를 어겨 한국 패소를 가져오고, 이익을 본 자들을 조사하여, 이익을 본 자들이 책임지게 해야 함.

※ (참고) 론스타 사건 전개 일지

(1) 론스타의 외환은행 경영권 인수, 경영권 매각 시도 및 한-벨기에 BIT 가서명

2003. 10. 론스타가 외환은행 경영권 인수²⁵⁾ 1.38조원(51%지분, 수출입은행 보유 주식)

※금융당국에 제출했던 동일인 신고서에 극동 홀딩스 I, 극동 홀딩스 II, 스타 홀딩스 등 론스타 지배 회사들이 빠져 있음

2003. 11. 론스타, 외환은행과 외환카드와의 합병 추진. 외환카드 주가를 불법적으로 떨어뜨려 6천400만달러 이익을 봄(론스타 ISD 판정문 373항)

2005. 11. 7. 론스타 국제중재판정에 적용된, 개정 한-벨기에 BIT 가서명(1974년 협정을 31년만에 개정)

2006년 론스타 경영권을 국민은행에 매각 시도

2006. 5. 14% 지분 콜옵션 매입

2007 DSB에 매각 시도

2007. 3. 참여연대 비금융주력자 문제제기

2007 년 13.6% 지분 일괄 매각(block sale)

2007. 론스타에게 배당 시작 (2007. 3. - 2011. 3.기간 1조 7,000 억원 이익배당 받음)

2007 9 3 HSBC와 계약(6.2조원)

금감위 같은 날, HSBC에 대한 승인 절차 중단 방침 발표

25) 경영권 인수 관련 법령

(1) 금산분리원칙: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주 4% 초과 보유 금지 은행법 제16조의 2 제1항 비금융주력자: 비금융 부문의 자산 합계가 2조원 이상

(2) 비금융주력자에게는 부실금융기관 정리 외국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특례조항: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인은 금융기관이 아니어도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0% 이상 보유 은행법 시행령 8조 2항

(3)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는 비금융주력자였다는 쟁점은 법원 판결에서도 일부 확인되었음. 2012년 법원은 “2005년 내지 2010년에는 론스타펀드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 원 이상임이 소명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시기에 피신청인 엘에스에프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사실 인정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8. 선고 2012카합496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결정)

(2)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판결과 론스타의 국제중재 제기 압박

- 2008. 2. 1.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1심 판결
- 2008. 6. 24. 론스타 주가조작 고등법원 판결 무죄 취지
- 2008. 7. 9. 론스타, 금융위에 국제중재제기할 것이라고 경고²⁶⁾
- 2008.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금융위기 발생 리먼사태
- 2008. 8. 1. HSBC, 계약 파기
- 2009. 2. 론스타 금융위에 국제중재 제기 재차 경고

(3) 하나금융에 매각 계약 및 이 사건 적용 한-벨기에 BIT 발효

2010 11. 하나금융 매각 계약 체결 지분 51% 인수대금 4조 6,888 억원

- 2010. 12. 3. 하나금융이 금융위에 경영권 인수 승인 첫 신청
- 2010. 12. 13. 금융위 하나금융의 경영권 인수 자격 심사 시작
- 2011. 1. 3. 김석동 금감위(금융위) 위원장 취임(-2013. 2. 25.)
- 2011. 3. 10. 론스타 주가조작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유죄취지)
- 2011. 3. 15. 하나금융 대법판결 직후 금융위 방문
- 2011. 3. 16. (금융위 정기 회의. 하나금융 인수를 승인하기로 예정되었던 회의였으나 취소)

2011. 3. 27. 론스타 국제중재판정에 적용된, 개정 한-벨기에 BIT 발효

- 2011. 3. 29. 하나금융과 론스타 관계자들 호놀룰루 미팅
- 2011. 5. 24. 하나금융과의 최초 주식인수 계약 최종 이행 예정일 (가격 43억 4,100만 달러)

26) 판정문 787항

(4) 론스타 이익배당 및 매각 계약 개정

2011. 7. 추가 이익배당 4억달러

2011. 7., 8. 하나금융과의 주식매매계약 개정 인수대금 4조4천억원(주당 13,390원), 판정부는 만일 금융위가 이 계약을 승인해 주었다면 론스타는 손실을 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²⁷⁾

(5) 론스타 주가조작 유죄판결과 매각 계약 개정

2011. 10. 6.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유죄 고등법원 판결 선고(이후 확정됨)

2011. 10. 12. 론스타, 유죄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선언

2011. 10. 25. 금융위, 10% 초과 지분 의결권 행사 중지 명령(No Vote Order)

2011. 10. 28. 하나금융 김승유 회장, 론스타 회장에게 이메일 송부

2011. 11. 18. 금융위 단순매각 명령(주가조작 확정에 따라 10% 지분 초과하는 41.2% 부분에 대하여 6개월 내 매각 명령. 2012. 5. 18.이 기한) 이날의 금융위 보도자료는 론스타에게 외환은행 주식을 하나금융에게 파는 것 대신 증권거래소를 통해 공개 매도하라는 징벌적 명령을 하는 것은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다는 내용을 담음²⁸⁾

2011 12. 3. 하나금융과 인수금액 3조 9,156억원으로 인수계약 개정(주당 11,900원)

27) 판정문 793항

28) 판정문 940항

(6) 금융위의 하나금융 인수 승인

2011. 12. 5. 하나금융 금융위에 승인 신청

2012. 1. 27. 금융위 하나금융 인수 승인

2012. 2. 하나금융, 론스타 지분 인수(35억 950만 달러)

2012. 2.(론스타 파견 이사) 론스타 주가 조작 유죄 고등법원 판결 선고(이후 확정됨)

(7) 론스타의 국제중재 제기

2012년 5월 론스타 중재의향서

2012 12월 론스타 정식 제소

46억 8천만달러 청구 그 구성은

① 하나금융과의 계약 승인 지연: 2010. 11.자 최초 주식매매계약과 가격 인하된 2011. 12. 3.자 주식매매계약 간 차액에서 2011. 7.자 이익배당금액을 공제하고, 2011. 5. 24.부터 2011. 9. 30.까지의 이자를 포함한 것으로, 2013. 9. 30. 현재 기준²⁹⁾ 누적손해액 4억 3,300만 달러, HSBC에 판매하지 못하여 누리지 못했다는 7.1억 달러(모두 합하여 1조 8천억원)

②부당한 조세 8천8백억원

③ Tax Gross-up 2조 4천억원(청구인들은 손해배상 받을 시 그에 대하여 한국 및 벨기에에서 부과될 세액 22% 및 33.99%를 추가로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

2015. 5. 8. 론스타 판정부 지정 특별검증인, 판정부에 제출되어야 할 문서 결정

29) 판정문 주 184(p.65)

(8) 민변, 비금융주력자 부적법 투자 항변을 제기하기 위해 변론 참여 신청

2015년 11월 30일, 민변 론스타 금산분리위반 부적법투자자 항변 제출 위해 변론 참여 신청

2015년 12월 판정부 한국 정부도 반대한다는 사유 등을 들어 민변 참여 거부(절차명령 15호)

2016년 1월 민변, 론스타 세금 손해 주장액수 공개 정보공개청구

2016 8 21 론스타 하나금융에 국제상사중재신청, 약 5억 8,600만 달러 손해배상 청구

2018년 12월 18일, 민변 론스타 금산분리위반 부적법투자자 항변 위한 변론 참여 2차 신청

2019년 4월 판정부 민변 참여 거부(절차명령 19호)

2019 5 13 하나금융이 론스타 국제상사중재 판정 승소(하나금융의 잘못이 아니고 한국 정부에 원인)

2020. 1. 판정부 ICC 판정문 증거 채택

(9) 한국 패소 판정

2022. 8. 31. 한국 패소

2억 1,650만 달러(위 하나금융과의 승인 지연 손해 4억 3,300만달러의 50%) 배상 책임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3.부터 미국 1개월 국채금리 복리 계산 지연손해금을 더 하여 지급할 것

토론 2

법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금융위원회, 패소를 불렀다.

권영국 (변호사, 전 론스타공대위 법률단장)

1. 협정상 의무위반의 내용

중재판정부 다수의견은,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정책 목적’에서 아니라 ‘그 자신의 자기 이익’에서 잘못을 저질렀다. 금융위원회는 민간 기업의 계약에서의 가격에 개입하는 것이 자신의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권한을 자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행사하여 론스타와 하나금융 사이의 외환은행 경영권 인수 계약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하나금융의 신청에 대한 승인을 지연시켰다고 판단함.

한마디로 말하면, 금융위원회가 승인이라는 자신의 권한을 자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행사하여 론스타와 하나금융 사이의 외환은행 경영권 인수 계약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하나금융의 신청에 대한 승인을 지연시킨 것이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제공할 의무를 위

반했다고 봄.

이를 반대해석하면, 금융위원회가 자신의 법적 권한 범위에 속하는 ‘정당한 정책 목적’에 따라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자신의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협정상 의무 위반이 아님을 의미함.

2. 판정문 일부 소개

XIII. 청구인들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제공할 협정상의 의무 위반을 입증했다.

779. 청구인들은 계약상 권리가 있는 그들의 투자 수익금을 수령할 것으로 합법적으로 예상하였으며, 원하는 경우 법이 정한 권한을 수행하기보다는 정치적 의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행위하는 규제기관의 개입 없이 일단 이루어진 투자를 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합법적으로 예상하였다. 살루카 대 체코 공화국 중재판 정부에 따르면 국가는 “투자자에게 자체 규제 당국의 강압이나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를 부여하여야 한다.”

780. 중재판정부 과반수가 설명하였듯, 금융위원회는 주가 하락을 조율했을 때까지 “관망” 정책(“관망”할 것이 남지 않은 후에도)을 따랐다. LSF-KEB는 2011년 10월 6일 유죄판결을 받았고 론스타는 2011년 10월 12일 항소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금융위원회가 수년 동안 “신중한” 역할을 우선시해 왔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그러한 “신중한” 권한을 행사해야 할 시기가 이르렀을 때 그 역할을 행사할 조짐을 보이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신중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금융

위원회는 하나그룹(Hana)이 지난해 12월 처음 승인신청을 한 이래로 금융위원회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매각을 보류한 주식을 LSF-KEB가 강제 매도하도록 하는 절차를 시작했을 뿐이다.

781. 중재판정부 다수의 관점에서 볼 때, 금융위원회 행위의 과정은 합리적 정책 목표에 대하여 합리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조치로서 피청구인 자신이 제안한 정의 내에서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이었다. 청구인은 (i) 정당한 정책 목표가 없거나 (ii) 정당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취해지지 않은 조치는 자의적인 조치라고 말한다. 중재판정부 다수의 관점에서 금융위원회의 위법행위는 “정당한 정책 목표”가 아닌 자체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782. 중재판정부 다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가격을 포함한 내약 (private agreement) 조건이 금융위원회의 권한 범위를 국회에 인정했음에도 가격 인하 확보를 위한 금융위원회의 성공적인 노력과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연기한 것은 금융위원회에서 자의적이고 악의적으로 규제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783. LSF-KEB는 가격 인하를 거부하고 처분명령에 따라 공개시장 매도에서 지배지분할증외 손실을 따를 수 있었지만, 단순히 금융위원회의 국내 정치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론스타로 하여금 그러한 모순에 빠지도록 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았다.

784. LSF-KEB는 금융위원회에서 이해상충을 토대로 부적절한 안건으로 내약에 부적절하게 개입하였을 때에만 이익 있음을 전제로 인하된 가격을 받아들였다.

785.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LSF-KEB가 2011년 12월 3일 하나그룹(Hana)과 수정된 주식매매계약(SPA)을 자유롭게 체결하여 금융위원회 대우와 손실 사이의 연관성을 제거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다수의 의견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는다. **론스타는 피청구인에게 한국의 규제 과정에서 입은 재정적 손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한 손실이 실제로 발생한 것처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를 통하여 그러한 손실을 모두 처리할 것이라고 오랫동안 경고해 왔다.**

786. 사실상, LSF-KEB는 국제 중재에서 청구할 손실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3일 개정된 주식매매계약(SPA)에 서명하였다.

D. 중재판정부 다수의 책임 분담

(1) 론스타의 위법행위가 “없다면” 하나그룹 구매는 2011년 3월 16일 회의에서 예정되었던 대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을 것이다.

840. 청구인이 한국 대중과 정치인들 앞에서 체면을 지키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실제 의도를 감추기 위한 알팍한 구실을 제외하고는 주가조작 유죄판결이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중재판정부 다수의 관점에서, 청구인의 이러한 자기 면책은 LSF-KEB, ■■■가 다음과 같이 증언했던 당시 외환은행 총재의 증언을 통해 반박된다:

880. 중재판정부 다수의 관점에서, “스모킹건”이 없는 이유는 하나

그룹과 론스타가 협상한 사적 매각금액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관할권이 없음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거듭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하나그룹과 언론을 통해 배후에서 가격인하를 조율하고자 하였다. 금융위원회는 가격인하를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권한 밖의 일이므로 그러한 사실이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4) 과실귀속에 관한 중재판정부 다수의 결론

881. 중재판정부 다수는 **금융위원회의 지연 및 가격인하 압박 전략**이 청구인 **LSF-KEB의 범죄행위와 마찬가지로**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통해 받은 지배지분할증이 부분적으로 감소한 론스타의 **순손실액 미화 4억 3,300만 달러의 동력인이자 근접원**이라고 결론지었다.

882. 비밀리에 녹취된 호놀룰루 회의에서 ■■■가 인정한 바와 같이 중재판정부 다수는 다음을 인정하였다. “규제당국과 함께 있었고 그들이 말했다면, 우리는 바로 서명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지금 승인할 겁니다. 글썄요, 그건 조금 양보를 하신다면 우리 일을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중재판정부 다수는 금융위원회의 의사소통이 그저 인화된 가격이 “우리의 일을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받아들인다. 금융위원회가 말과 행동을 통하여 분명히 전달한 바는 하나그룹이 론스타에게 지불하기로 한 이익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치인, 노조, 강력한 비판가들로부터 정치적 보호책이 될 만큼 충분히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만 승인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883. 그러나 중재판정부 다수는 론스타 유죄판결이 2011년 12월 3일 개정된 주식매매계약(SPA)을 포함하여 론스타의 손실에 대한 근접원이자 동력인으로 계속적으로 작용하였고 처분명령의 영향 아래 론스타가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당 11,900원으로 가격을 인하하고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해 새로운 가격을 수락하는 것임을 깨달았다는 점을 받아들인다.
886. 중재판정부 다수의 관점에서, 금융위원회가 주장하는 “신중한 관심”은 가격인하가 금융위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성에 찰 때까지 하나그룹에 대한 매각 승인을 연기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였다.
887. 주가조작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하나그룹 신청에 대한 결정을 수개월 동안 미룬 금융위원회는 유죄판결과 무관하게 하나그룹의 인수 승인을 진행하였으며 “신중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은 가격인하에만 귀속될 수 있다. 가격인하 조건이 충족되자 금융위원회는 인수를 승인하였다.
888. 금융위원회의 주가하락 쥐어짜기 전략이 론스타의 유죄판결과 강제매각으로 가능해진 것은 사실이나, 중재판정부 다수의 관점에서 론스타가 자체적으로 재정적 손실을 입었다고 하여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미화 4억 3,300만 달러의 손실을 입힌 것에 대해 (피청구인이 책임져야 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893. 중재판정부 다수의 의견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법적 의무보다 자체 제도적 이익의 증진을 우선시함으로써 소송의 대상

이 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금융위원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비판가들이 승인이 성급하게 이루어졌다고 금융위원회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복행위를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보복의 일환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대대적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일부 국회의원은 금융위원회 고위 관리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동시에, 논의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유죄판결과 그에 따른 처분명령이 손실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 LSF-KEB가 유죄판결을 받지 않고 그로 인한 처분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금융위원회는 하나그룹의 외환은행 인수 가격을 금융위원회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지 못했을 것이다.

940. 금융위원회가 처분명령에 “징벌적” 매각 조건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데 동의한다. 반대의견서는 제69항부터 제7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징벌적 매각을 부과하라는 “모든 압력에 저항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대의견서는 금융위원회가 징벌적 매각, 즉 론스타가 모든 지배지분할증이 거부되는 공개시장에서의 매각을 명령할 관할권이 있다고 가정한다. 이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사실, 2011년 11월 18일 처분명령을 공표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는 “「은행법」상 그러한 처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른바 ‘징벌적 처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했다.[강조 추가] 반대의견서는 금융위원회가 주장하지 않은 징벌적 권위를 금융위원회에 주장하는 것이다.

3. 협정상 의무에 위반하지 않고 덕튀를 막을 수 있었음.

첫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시 론스타가 제출한 서류와 주장에 따라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인수 승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론스타가 2007. 7. 10.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일본내 골프장 법인 PGM과 일본내 호텔법인 Solare Hotels and Resorts K.K.가 론스타의 비금융 계열회사라는 자료) 또는 2008. 9. 9. 론스타가 당시 이해선 금융위원회 과장에게 제출한 자료(일본내 골프장 법인 PGM과 일본내 호텔법인 Solare Hotels and Resorts K.K.를 포함한 비금융 계열회사의 자산 합계액이 은행법 소정의 비금융주력자 요건인 한화 기준 금 2조권을 넘어 2.8조원에 이르고 있음을 밝힌 자료)에 기초하여 정기 또는 수시 적격성 심사를 통해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판정하고, 비금융주력자에 따른 은행법상의 처분을 했어야 하나 자료를 캐비닛에 처박아두고 있다가 시민사회와 언론의 문제제기가 분출하자 2011. 3. 16.에 몰아서 반기적격성 심사를 하고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는 결정을 함.

심각한 직무유기였으나, 검찰에서는 2011. 3. 16. 금융위원회가 몰아서 심사를 하고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므로 혐의 없음으로 각하 처분을 함.

검찰이 당시 금융위원회 관련자들을 직무유기죄로 기소하여 법원으로부터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는 사실을 판단받았다면, 론스타의 덕튀를 막을 뿐만 아니라 론스타로부터 국제중재재판을 제기당하는 일도 없었을 것임.

둘째, 2011. 3. 10. 대법원에서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같은 해 10. 6. 서울고법에서 론스타와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유죄판결, 10.13. 론스타 재상고 포기 유죄판결 확정,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금융위원회는 초과보유요건 등을 충족하도록 명할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도초과보유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음. 따라서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범죄 유죄판결 확정 후 금융위원회는 자신의 권한으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보유 지분 중 10% 초과 주식에 대해 공개시장에서의 처분 등을 명하여 경영권 프리미엄 등의 초과이익을 박탈할 수 있었음.

그러나 금융위원회에는 거래 가격 인하를 압박하는 한편 하나금융지주와의 계약을 승인하는 것과 같은 단순매각명령을 내림으로써 먹튀를 도왔고, 도리어 가격 인하 압박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해 한국 정부가 론스타로부터 국제중재재판을 제기당해 3천여 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함.

전성인 교수가 탈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 두 경우 모두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위원들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4. 업무상 배임죄 성립에 대한 검토 필요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금융감독 관련자들은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금융감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적법하

계 사무를 처리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

반기 적격성 심사를 통해 비금융주력자임이 밝혀지거나 주가조작이라는 금융범죄를 저지른 한도초과보유주주 론스타에게 한도초과보유요건 충족을 명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한도초과보유 주식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징벌적 성격을 갖는 공개 시장에서의 처분 등을 명할 수 있었음.

그러나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은 비금융주력자이거나 금융범죄로 처벌받은 론스타에 대해 은행법상 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대신, (중재판정문에 따르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의 승인 권한을 남용해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지분에 대한 인수계약을 맺고 있던) 론스타에게 주식 매각가격 인하를 압박함.

이를 통해 하나금융지주가 인화된 가격으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을 인수토록 하여 하나금융지주에게 수천억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반면, 대한민국에게는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제공할 의무 위반을 이유로 론스타로부터 국제중재재판을 제기당하고 2억 1,650만 달러 및 지연이자 손해를 배상할 상황에 처하게 만듦.

따라서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관련자들에게 대한민국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음.

아울러 당시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외환은행 인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대해 징벌적 매각명령을 하는 대신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지

분 인수와 매각가격 인하 압박을 공모하고 실행하였을 개연성이 큼. 즉, 다시 말해 김승유 회장은 금융위원회 승인 여부를 핑계 삼아 금융위원회와 매각가격 인하 압박을 공모하고 함께 실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김승유 회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음.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득액이 50억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므로 공소시효는 15년임.

김승유 회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 공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면,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도 사용자 책임으로서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임. 끝

토론3

조세 쟁점과 정부의 95.4% 승소 주장 등 분석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전 론스타공대위 집행위원장)

1. 론스타, 손해배상 가액

1) 매각지연으로 인한 손해 - 15억7천만 달러

금융위의 매각 승인 지연과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 압박

▲ 2008년 HSBC에 매각 실패

▲ 2012년 하나금융에 매각 지연

2) 국세청의 자의적 과세처분 - 7억6천만 달러

3) 승소시 보전금 - 20억4천만 달러

계 : 43억7천만 달러 ⇨ 이자 등 정정 최종 46억8천만 달러

2. ‘ISDS 판정 사실상 승소’ 발표한 정부, “청구금액 대비 95.4% 승소”

<2022. 8.31. 법무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중>

- 한편, 중재판정부는 나머지 금융 쟁점 및 조세 쟁점에 관하여는 우리 정부 측 주장대로 중재판정부의 관할이 없거나 국제법 위반이 없음을 확인하여, 론스타 측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론스타 측 청구금액 약 46.8억 달러(약 6.1조원) 중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원)에 대하여 론스타 측이 승소하고, 나머지 44.6억 달러(약 5.8조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승소하였습니다.
 - 정부는 청구금액 대비 95.4% 승소하고, 4.6% 일부 패소한 것입니다.

1) 조세 쟁점에 관한 정부 주장 분석... 정부 주장은 과장

정부는 “조세 쟁점에 관하여는 우리 정부 측 주장대로 중재판정부의 관할이 없거나 국제법 위반이 없음을 확인하여, 론스타 측 주장을 기각”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중재판정부는 ‘조세 관련 부분’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사실관계적 토대나 법적 토대가 부족하기에 청구인들의 조세청구를 기각’ 하였는데, “조세취급은 국내기준이나 국제기준에 위배되지 않았으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조세정책의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제대로 조치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인정한다는 취지였음.

〈중재 판정문 중 조세 관련 발췌〉

423. 서울행정법원은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론스타의 벨기에 투자목적회사가 단순한 “도관회사”에 불과했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구체적인 포인트는 대법원에서도 유지되었다(한국 법원이 론스타가 신중하게 다른 결론을 고려할 만큼 충분한 증거를 법원에 제공하지 못했다고 단언한 것을 주목하여야 한다).

424. 청구인들은 국세청이 끈질기게 그리고, 청구인들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가차 없이 청구인들을 압박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현재 본 중재사건에서 론스타가 추진하고 있는 조세 이의사건을 기각한 것은, 국세청이 아니라 한국 법원, 특히 한국의 대법원이었다.

425. 론스타는 약 15년 동안 대한민국의 법원 시스템의 심급을 오르내리며 세금 문제에 대한 소송을 해왔다. 상당한 승소를 거두었다(그리고 상당한 패소도 당했다). 예컨대, 한국 대법원은 법인세율이 아닌 개인세율임을 근거로 하여 Star Holdings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기도 하였고, 세금의 목적상 청구인들이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는 국세청의 주장을 기각하기도 하였다. 청구인들 자체의 세무전문가는 한국 법원은 독립적이고 공정하다고 했다. 론스타의 변호인은 2020년 10월 15일 “청구인들은 본 사건에 대해 그리고 현재까지 대한민국 법원을 상대로 재판거부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확인해주었다.

426. 재판거부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이익

에 맞춰서, 국세청 자체에 화력을 집중하고 그 국세청의 판단을 심사한 법원의 판단은 부인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보인다.

451. 한국 법원들은 실질과세의 적용은 법률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결과만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국세청은 법인세가 아니라 개인소득세의 수준에서 유한 파트너십의 세금에 대해 처분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452. 대법원의 2012년 1월 27일 자 판결이 있는 후, 국세청은 개인세금이 아니라 법인을 기준으로 다시 처분을 하였다. 국세청의 그 재처분에 대한 소송에서는 론스타가 패소했다. 2016년 12월, 대법원은 한-미 조세조약의 적용에 관한 론스타의 주장과 여러 헌법상의 주장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벨기에 “도관” 법인은 한-벨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하급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했다.

455. 서울행정법원은 국세청이 과세목적상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론스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론스타 독립체들에 대한 국세청의 처분은 취소되었으며, 그 비용은 국세청이 부담하게 되었다.

456. 국세청은 그 패소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 동 법원은 그 비용을 국세청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457. 국세청은 계속해서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상고 이유로 3가지를 제기하였는데, 그 모두는 기각되었고, 과세처분을 취소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최초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동 법원은 그 비용을 국세청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최근 변호인들이

제출한 서면에 따르면, 론스타 독립채들은 29,256,863,290원의 세금을 환급 받았다. 청구인들은 1,760억원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 쟁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469. 재판거부의 주장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투자에 대한 2011년 3월 27일 이후의 조세취급이 2011년 투자보장협정에 위배되는 것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청구인들이 의문을 제기했고, 본 중재판정부가 동의하는 여러 사유들로 인해 청구인들의 이의제기가 기각되었던 한국 법원에서,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한 청구인들의 여러 주장을 심리하였다. 즉, 본 중재판정부의 견해로는, 그 조세취급은 국내기준이나 국제기준에 위배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수용, 충분한 보호 및 안전, 우산조항 또는 송금자유 규정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위법행위도 없었다고 본다. 피청구인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조세정책의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제대로 조치를 한 것이었다.

471. 위에 적시된 바와 같이, 실질과세의 적용은 자의적인 것이 아니었다. 합리적인 공공정책에 있어서의 “실질과세” 원칙과 한국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그리고 본 중재사건에서 설득력 있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에 비추어 보면, 그 적용은 위 정책과 관계법령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476. 한국의 하급심 법원들은 국세청의 실질과세 규칙의 적용을 지지했다. 그러나 한국 대법원은 일부만 동의했다. 한국의 최고법원은 실질과세원칙이 말레이시아 법인과 케이만군도 지주회사 모두에게 적용되었다고 인정하였지만, 하급심 법원들과 국세청이 케이만군도 유한 파트너십의 정당성을 살피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심리미진이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대법

원은 유한 파트너십에 대해서는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과세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대하여, 스타타워 매각에 관한 2012년 1월 사건에서 론스타가 승소했던 사례를 인용하였다.

486. 조세조약에는 그 자체의 집행 방식을 두고 있으며, 그 조약의 당사국 중 누구도 그 집행을 투자-국가간 중재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지 않았다

487. 아무튼, 청구인들은 청구인들 자체의 세무전문가조차도 공정하고 공평한 정의를 제공한다고 말하는 절차에 따라 한국 법원에서 자신의 조세 관련 지위에 대해 철저히 소송으로 다투었다. 따라서 본 중재판정부는 비록 청구인들이 자신들의 조세청구를 우산조항에 따라 제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488. 본 중재판정부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 (a) 세금의 정상적인 납부 의무는 수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b)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배당금과 외환은행 주식 매각대금에 대해 원래부터 면세권이 전혀 없었다.

489. 요약하면, 본 중재판정부는 납득할 수 있는 사실관계적 토대나 법적 토대가 부족하기에 청구인들의 조세청구를 기각한다.

2) 론스타, 한국법원에서 조세 소송 관련 리서치

〈대한민국 법원에서 조세 소송 관련〉

국세청이 론스타에게 부과한 세금 8천5백억은 지난 2017년과 18년에 관련 국내 소송들은 모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났다. 론스타는 부분승소(4천 3백억여원)

론스타는 일부 승소(서울에서 오류를 인정)해 론스타는 2천4백억 원 정도를 이미 환급받았고, 또 하나는 론스타가 한국에서 고정적인 사업장을 운영했다며 몇몇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 1,940억 원이 부과됐는데, 법원은 전액 돌려주라고 판결했다(국세청은 론스타에 250억 원만 환급하고 1,690억원 미지급. 이자등으로 판정문에는 1,760억원 기재)

3) ‘청구금액 대비 95.4% 승소’ 분석... 정부 주장은 과장

론스타의 청구금액 46억8천만 달러 중 조세에 해당하는 7억6천만 달러는 한국법원에 소송을 진행하였으므로, 청구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임(론스타는 부분 승소하여 2천4백억 원 정도를 이미 환급받았고, 국세청이 미지급한 1,690억원에 대해 소송 중).

□ 론스타, 한국정부에 협상 공식제안(2020. 11) ⇔ 한국정부, 거부

■ 론스타가 요구한 협상 금액은 8억 7천만 달러

론스타가 2020년 11월 정부에 공식 제안 한 협상 금액은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의 하나금융 매각을 늦게 승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4억 달러(4억~7억달러), 부당하게 세금을 냈다며 1억 5천만 달러, 여기에 지난 8년간 연 5%의 이자로 3억2천만 달러를 더했음.

세금은 국세청 미지급금에 대해서 현재 한국법원에서 소송 중인 부분이므로, 협상 금액의 핵심은 하나금융으로 매각지연 손해액과 지연이자(5%)임.

□ 협상 제안 금액에 따라 론스타의 실제 목표는 하나금융 매각 지연손해액

과거 ‘올림푸스캐피탈 ICC중재판정’에서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행위를 주도한 점을 들어 50%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2011년 1차 중재와 2014년 2차 중재)한 바 있음. 론스타는 올림푸스캐피탈 ICC중재판정 경험을 바탕으로 ISDS에서도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한 50%의 손해배상책임을 예상하여, ISDS 손해배상금을 부풀리고 한국정부를 상대로 집요한 협상을 제안한 것으로 의심됨.

-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관련하여, ICC는 외환카드의 2대주주인 올림푸스캐피탈의 손해배상금(718억원)을 외환은행과 론스타가 연대배상하는 것으로 중재 결정함(1차 중재.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2011. 12. 13)
- 론스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718억원)

전액을 올림푸스캐피탈에게 지급하였고, ICC에서, 론스타와 외환은행의 책임을 각각 50%로 중재 결정함.(2차 중재.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2014. 12. 23)

- ICC, 외환은행에게 론스타 청구금액 중 50%와 지연이자 5%(411억원) 중재판정(2014. 12. 23). 외환은행은 중재 결정문 받자마자 429억(배상금 50%+소송 비용+연 5% 이자)을 론스타에게 지급(2015년 1월 경)
- ICC 판정사유는 △올림푸스캐피탈로부터 외환카드사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론스타는 지분희석방지 이익을 얻었고, 외환은행은 저가매수 이익을 얻어 쌍방이 이익을 누렸음. △론스타 측 이사의 강박행위는 명백하나, 외환은행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주식매수 결의하였으므로 외환은행도 불법행위에 관여하였음. △ 저가 매수의 주체는 외환은행이고, 이사들이 만장일치로 결의해 기본적으로는 외환은행 책임이지만 론스타가 행위를 주도한 점을 감안해서 론스타의 책임을 최대 50%라고 판단함.

3. 산업자본 관련 ISDS 이슈

1)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관련 정부의 입장

〈론스타 ISD 관련 주요 현안 설명〉

2020년 9월

나. 정부 대응

-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대리로펌과 함께 론스타 ISD 국제중재 승소에 도움이 되는 모든 자료와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였음
- 그 결과, ‘비금융주력자’ 항변을 제기할 경우 ISD 중재판정에 불리한 측면이 있다는 정부대리로펌의 법률 판단에 따라서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임
 - 특히,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를 공정하게 대우했다는 주장과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서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었다는 주장 사이에 일관성이 결여되는 측면 등을 고려
 - * 항변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①론스타가 '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비금융주력자인 점 및 ②그 위법성이 투자보장협정상 보호를 누리지 못할 정도로 중대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 필요

■ 정부, ‘ISDS에서 비금융주력자 주장이 불리하다’ 고 판단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가 문제될 때마다,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가 아니’ 라고 결론내림. 론스타가 탈출할 때까지 동일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였고, 이를 토대로 론스타의 대주주적격성에 문제가 없다는 등 모든 행정행위를 해왔음.

그런데 ISDS에서 ‘이를 뒤집고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임을 주장’ 하는 것은 중재에서 한국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2) ISDS 서면에서 산업자본 언급 부분 발췌

<KBS 보도>에 따르면, ISDS 서면에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었다”,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가 외환은행 주식을 갖는 심사와 승인 과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까지 서술하고 있다(출처는 한국측이 2014년 3월21일에 제출한 반박서면 주석 76번).

산업자본 여부에 대해서는 “서로 안 다루는데 양쪽이 동의했다”고 론스타가 주장(2015년 12월 21일 절차명령 15번에 있는 내용).

3) 법원, 일정기간 동안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인정(가처분 결정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3. 28. 론스타 공동대책위원회가 제기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정기주총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소명부족을 이유로 기각함. 그러나 법원은 위 결정을 통해 론스타가 적어도 2005년부터 일본 골프장을 매각하기 전인 2011년 12월초까지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였음을 확인하였음.

□ 법원, 결정문 발췌

총 합계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766,178백만 원인데, 그 중 극동건설의 자산만 706,479백만 원에 달하였다. 위 극동건설은 2007. 6.경 주식회사 웅진홀딩스에 매각되었는데 극동건설의 연결계무제표를 기준으로 할 때 2005년 말의 자산은 약 481,719백만 원, 2006년도 자산은 약 543,736백만 원이다. 그렇다면 2005년과 2006년에 각 PGM의 자산과 국내 비금융회사 자산의 합산액은 각 2조 원을 초과함이 소명된다.

회계년도(연말 기준)	PGM의 자산 (단위 : 억 원)
2010	37,038
2009	34,910
2008	37,650
2007	20,790
2006	17,474
2005	18,414

따라서 2005년 내지 2010년에는 피신청인 엘에스에프의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 원 이상임이 소명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시기에 피신청인 엘에스에프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외국자본에 대한 은행법 적용을 배제·완화하거나 신뢰보호를 이유로 론스타에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금융감독당국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했음.

□ 법원, 결정문 발췌

(2) 살피건대, 은행법 및 동법 시행령은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과 관련하여 외국자본 등의 경우에도 예외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외국자본 또는 외국사모펀드의 경우라 하여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동일인이나 비금융회사 여부에 관한 심사강도를 완화할 근거가 없으며, 이러한 차별적 규제가 오히려 형평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 나아가 외국 산업자본에 대하여도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통한 자금고화 방지를 위해 도입된 '금산분리의 원칙'이라는 비금융주력자 규제의 취지는 유지되어야 할 것이므로, 외국 산업자본의 경우에는 은행법의 적용이 배제 또는 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